

(비공식 번역본)
투자촉진위원회 안내사항
제7/2563호
의학산업에 대한 투자촉진 규정

현재의 상황과 국민들의 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품 생산에 대한 촉진과 관련하여 의학제품에 대한 신속한 투자촉진의 필요성에 대해 부응하기위해 불교년 2520년 투자촉진법 16항, 18항, 31항, 35항에 의거하여 투자촉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림

1. 투자촉진을 받은 사업의 종류의 조정을 위한것으로 2014년 12월 3일 투자촉진위원회 안내사항에 고시된 활동범주 1.16과 활동범주 3.2를 취소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용함

활동범주	권리와 혜택
1.16 농업을 통한 생산제품으로 잉여 인화물이나 쓰레기, 농업제품으로부터 온 잉여품을 포함해 의학에 관련된 인화물이나 알코올(Pharmaceutical Grade) 관련 사업	
1.1.6.1 농업을 통한 생산제품으로 의학에 관련된 인화물이나 알코올 (Pharmaceutical Grade)관련 사업	A2
1.1.6.2 잉여 인화물이나 쓰레기, 농업제품으로부터온 잉여품을 이용한 인화물 관련 사업(예를들어 Biomass to Liquid (BTL) 오염된 물을 통한 바이오매스)	A2
1.1.6.3 바이오매스 인화물 생산 사업	A3
3.2 Non-Woven Fabric 생산 사업 또는 Non-Woven Fabric을 통한 위생제품 사업(Hygienic Products)	
3.2.1 Non-Woven Fabric 생산으로 예를들면 Spunbond나 Meltblown등이 해당되며 위생마스크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나 의학용 도구등	A3
3.2.2 그외에 다른 Non-Woven Fabric생산이나 Woven Fabric을 통한 위생제품 사업(Hygienic Products)	A4

2. 국내의 위생 마스크와 의학관련 도구에 대한 신속한 필요성에 부응하기위해 의학 산업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한 규정

2.1 모든 전 지방을 구역으로 지정

2.2 아래와 같은 활동범주에 해당되는 사업에 권리와 혜택 지정

활동범주 3.2.1 Non-Woven Fabric 생산으로 예를들면 Spunbond나 Meltblown등이 해당되며 위생마스크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나 의학용 도구등

활동범주 3.11 의학도구나 부품 생산 사업

3.11.1 위험요소가 들어간 의학도구 생산이나 고급 기술(예를들면 X-Ray 기구나 MRI 기구, CT scan 기구나 신체에 삽입되는 재료등)

또는 정부관련 의학분석에 사용되는 도구나 상업용 목적으로
정부와 협력해 사용되는 도구 생산 사업 등

3.11.2 그 외에 다른 종류의 의학 도구 생산 사업(천이나 섬유등으로
만든 도구 생산 제외)

3.11.3 천이나 섬유등으로 만든 도구 생산 사업으로 예를들면 가운,
시트, 베개, 얼굴 덮개 천, 거즈, 솜등이 해당

활동범주 6.9 활성 원료 생산 사업(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활동범주 6.10 약 생산 사업

6.10.1 목표 항목에 속해있는 약 생산

활동범주 7.12 바이오 테크놀로지 산업(Biotechnology)

7.12.2 분석과 개발 사업 또는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바이오
의료용 기구 및 물품 생산 산업

7.12.3 분석과 개발 사업 또는 의료용 검사복 생산사업

권리와 혜택

투자금액으로 부터 오는 순 이익의 50%에 해당되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3년간 부여
하며 법인세 면제 혜택이 끝나는 날로부터 계산

조건

(1) 2020년 1월1일부터 3월30일까지 투자촉진요청서를 제출한 프로젝트여야 함

(2) 생산을 시작을 통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익이 있어야함

(3) 생산량의 50%이상 판매 또는 기부를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국내에서 해야함

3. 이전과 같은 생산 방식 변경에 대한 지원 규정은 의학도구 생산을 할수있게하는것으로
계속 투자촉진 지원을 받는 자를 지원하기위해 의학도구나 의학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
등을 포함한 재료 생산에 잠재력이 있는 자를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이를
의학도구로 지정을 하지 않았는데 예를들면 개인 보호 용품(Personal Protection
Equipment: PPE)등이 해당되며 의학도구 생산 또는 의학도구 재료 생산 및 의료 목적을
위한 기구 생산을 위해 생산 방식을 아래와 같이 변경 할수 있음

3.1 이전과 같이 계속 투자촉진을 받는 프로젝트의 경우 의학도구 생산 또는 의학도구
재료 생산 및 의료 목적을 위한 기구 생산등을 포함한 활동범주를 이미 승인을 받아
진행을 시작했더라도 추가 요청할수있음

3.2 이전과 같이 계속 투자촉진을 받는 프로젝트의 경우 기계나 기구의 추가 투자를 해

야하며 이는 3.1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함으로 수입세를 면제받을수가 있고 추가하는
기계나 기구의 경우 수입해오는 기한이 지났더라도 2020년 이내에 수입해 와야함

3.3 프로젝트 수정안 제출은 2020년 9월 이내에 해야함

2020년 4월 13일부터 적용

2020년 5월 14일에 고시

General Prayut Chan-o-cha

(Prayut Chan-o-cha)

총리

투자촉진위원회장